

#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제정 2020.02.29      개정 2023.01.01  
개정 2021.07.01      개정 2023.09.01  
개정 2022.08.01

## 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,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, 인권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으로서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함)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·석사·박사·통합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.(개정: 2023. 1. 1)

1.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2.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
3.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(개정: 2023. 1. 1)

제3조(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)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인권 보호 및 관리·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
2.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
4.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,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및 본 대학의 『연구실 안전관리규정』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(개정: 2023. 9. 1.)
6. 학생인건비 부당회수(미지급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본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(연구책임자의 의무)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

2.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,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
3.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·연구수당 산정,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(개정: 2023. 9. 1.)
4. 학생인건비부당회수(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·운용 포함) 방지에 관한 사항 (신설: 2023. 9. 1.)

제5조(학생연구자의 의무)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.

1.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
2.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
3. 학적변동, 업무수행 불가능,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(개정: 2023. 9. 1.)

제6조(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)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, 처우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,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9. 1.)

## 제 2 장 학생연구자의 학업·연구 활동 보장

제7조(연별·반기별 활용계획 수립) 연구책임자(지도교수)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,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 또는 반기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, 연구개발과제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본 대학 『대학원 학생정원 및 학생조교 운영세칙』에 따라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(개정: 2022. 8. 1.) (개정: 2023. 9. 1.)

제8조(연구참여확약 체결) 연구개발기관의 장(연구개발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 포함. 이하 동일),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: 2022. 8. 1.) (개정: 2023. 9. 1.)

1. 참여과제명, 연구수행내용, 구체적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2. 참여기간, 금전적 보상,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, 안전 및 인권·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3.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할 수 없다.

제9조(연구참여확약 변경)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,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.(개정: 2023. 9. 1.)

1.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
2.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
3.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
4. 학생연구자가 질병·실종·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5.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(신설: 2023. 1. 1)

제10조(업무범위 제한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·외 기여·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.

제11조(학업·연구권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부당업무 거부권 보장)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,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

제13조(학생인건비 계상기준)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%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(개정: 2022. 8. 1.)(개정: 2023. 9. 1.)

1. 학사과정 : 월 1,300,000원
2. 석사과정 : 월 2,200,000원
3. 박사과정 : 월 3,000,000원
4. 통합과정 : 월 3,000,000원(신설: 2023. 1. 1)

제14조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 ①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,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

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삭제: 2023. 9. 1.)

제15조(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,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.

#### 제 4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

제16조(통합관리계정 설정)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개발기관(학과)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하여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1. 1.)

제16조의2(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) 본 대학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위과정 별로 일정 금액을 균등지급한다.(신설: 2023. 1. 1.)(개정: 2023. 9. 1.)

1. 석사과정 월 440,000원
2. 박사과정 월 600,000원
3. 통합과정 월 600,000원

제16조의3(균등지급 대상) (삭제:2023. 9. 1.)

제17조(학생인건비 지급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본 대학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본 대학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.

④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8조(학생인건비 관리) 본 대학은 학생인건비 수입·지출·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,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자체점검) 본 대학은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9. 1.)

## 제 5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

제20조(인격권 보장) 누구든지 폭언·폭행·성추행·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, 본 대학은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9. 1.)

제21조(건강과 휴식 보장)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9. 1.)

제22조(안전 보장) 본 대학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 및 본 대학의 『연구실 안전관리규정』에 따른다.(개정: 2023. 1. 1.) (개정: 2023. 9. 1.)

제23조(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)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, 본 대학과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(개정: 2023. 9. 1.)

제24조(재정운영 정보 공개)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과제 수행현황,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 대학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 대학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25조(고충·상담 창구운영) 본 대학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,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고충·상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, 본 대학은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,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6조(처벌·제재)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학내 제 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감사실 등 교내 관련 부서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본 대학은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,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, 학생연구자 정원(TO) 조정,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.

## 제 6장 기타

제27조(기타)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「학 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」을 따른다.(개정: 2022. 8. 1.)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2월 29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「학생연구자 내부운영 지침」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